

남포교회 새가정부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포교회 새가정부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성경과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성도들의 열심과 헌신(Doing)이라기보다 우선적으로 성도들의 됨됨이(Being)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 일할 것을 요구하시기보다 우리 자신을 목표로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소중한 목적인 것을 기억하고 각자 가정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실력을 기르는데 본회의 목적이 있다.

제3조[설치] 본회는 남포교회(이하 "본교회"라 한다.)내의 기관으로 설치한다.

제4조[모임] 본회의 모임은 본교회 주일 3부예배 후 별도 예배모임으로 이루어진다. 그 외 야유회, 임원모임, 조별모임 등 특성과 필요에 따른 모임이 있다.

제2장 구성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

제5조[자격] 본회의 구성원은 남포교회에 등록된 기혼자로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혼 후 5년까지 자격을 가진다.

제6조[권리] 본회의 구성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피선거권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4장을 참조한다.

제7조[의무] 본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① 본회의 규정된 회칙과 결의 사항의 준수의무를 갖는다.
- ② 본회의 예배와 성경공부의 참석의무를 갖는다.
- ③ 회비의 납부의무를 갖는다.
- ④ 당회의 처리에 순종의무를 갖는다.

제3장 조직

제8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단을 둔다. 임원단은 임기 동안 본회를 우선으로 섬기

고, 다른 부서의 겸임을 지양한다. 임원의 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

- ① 회장 1명
- ② 회계 1명
- ③ 서기 1명

제9조[임원의 직무] 임원은 본 회의 목적을 따라 공동체의 운영 일체를 책임지고 논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진행한다. 각 임원의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여 운영 일체를 총괄하고 통솔한다.
- 임원과 팀장을 구성하고 임원, 팀장과 함께 본 회의 모든 업무를 책임진다.
- 필요시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 본 회의 연합과 성숙을 위해 성실한 의무를 다한다.

② 회계

- 본 회의 회계출납과 회계장부 정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연간 예산계획을 세우고,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한다.
- 매월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 사역자 및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 1년 예산계획에 따라 각종 경비와 부서지원비 등을 지출한다.
- 경조기준에 따라 경조비를 지출한다.

③ 서기

- 본 회의 각종 회의록을 작성하며 기록문서 일체를 담당한다.
- 정기(임시)총회 및 모든 회의와 임원회의 인원을 점검하고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 새로운 지체들에 대해 새가족팀에게 통보하고 챙김을 독려한다.
- 주소록을 만들고, 변경 사항을 점검한다.
- 매주 출석인원을 체크하고 담당 사역자에게 보고한다.

제4장 선거 및 임기

제10조[선출방법] 본 회의 임원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장 및 회계 후보자는 본 회의 출석한지 2년 이상 된 세례교인으로서 본 회 구성원들의 추천을 통해 세워진다.
- ② 회장 및 회계 선거는 정기(임시)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로 선출하되,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단독입후보시 찬반투표로 결정한다.
- ③ 서기는 본 회 구성원 중 회장과 회계가 논의하여 본 회 구성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④ 신 임원단의 구성 및 신규 임원단의 업무 인수인계는 정기(임시)총회 후 8주 이내에 완성

한다. 완성된 임원단은 본 회원 앞에서 공표의 의무를 가진다.

제11조[임기] 임원단의 임기는 매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1년으로 한다.

제12조[보선자의 임기] 결원으로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회장유고 시 임시총회를 통해 회계가 권한을 위임받는다.

제5장 회의

제13조[회의종류]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한다.

- ① 정기총회 : 매년 12월 중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 3주 전에 공고한다.
- ② 임시총회 : 임원회의 결의나 재적회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정족수] 본 회의 각종 회의 성수는 재적 1/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

제15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6조[재정조달] 본 회의 재정은 구성원들의 회비와 교회 부서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비] 본 회의 회비는 임원단에서 결정한다.

제18조[재정지출] 본 회의 재정지출은 사업계획 및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야 한다.

제7장 부칙

제19조[회칙수정] 본 회의 회칙 수정은 정기(임시)총회 시 출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관례] 본 회칙에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나 당회의 지도에 따른다.

제21조[효력] 본 회칙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